



제391회국회(정기회)
제 4 차 교 육 위 원 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 지원 등〉

■ 광상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390호)

2021.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박재유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보통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	3
2. 기준재정수요 단위비용 산정 시 학생수 고려	10
【참고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곽상도 · 김희곤 · 정찬민 · 김정재 · 이종성 · 송석준 ·
박대수 · 권영세 · 김도읍 · 김성원 의원(10인)

2. 발의연월일 : 2021. 9. 2.

3. 회부연월일 : 2021.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2021년 4월까지 세입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이 증가하였고, 올해 7월에 통과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에 의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4,000억원 정도가 더 지급될 예정이다. 각 교육청은 이러한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2조 3,000억원을 적립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 및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 금액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으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물가변동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및 제6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보통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u><신설></u>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u>교육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다.</u> ③ ----- 제1항 및 제2항----- ----- ----- ----- -----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으며, 재원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전출금 제외)¹⁾로, 그 규모는 내국세와 연동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안은 64조 3천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

(단위 : 조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안)
본예산	42.9	49.5	55.2	55.4	53.2	64.3
추경	1.8	-	-	△1.9	6.4	-
최종예산	44.7	49.5	55.2	53.5	59.6	64.3
(전년대비)	1.6	4.8	5.7	△1.7	6.1	4.7

자료: 교육부

2021년도에는 내국세의 초과 세수로 인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조 4천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바, 이처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에 대응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일반자치단체, 교육청)가 설치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여유자금 등을 적립하여 재정 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④ 국가가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교육청의 재정이 악화되어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적립되어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세입예산 7,374억원을 확보한 바 있음.

<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현황 >

(단위 : 억원, 2020년말 기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합계
4,697	1,670	248	924	750	1,820	1,484	3,118	1,939	642	1,203	3,202	1,360	23,057

자료: 교육부(서울, 대구, 전남, 제주는 미적립)

<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현황 >

(단위 : 억원, 2021년 본예산 기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북	합계
2,300	1,010	485.5	375	500	600	969	1,135	7,373.5

자료: 교육부(서울, 대구, 전남, 제주는 미적립)

한편,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 감소, 등록금 동결, 인건비 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대학들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수립(2019. 9)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 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 특수목적)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

구)으로 재구조화(2018년 3월)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장학금 제도²⁾를 통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음.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적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유자금 등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한정된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

특히,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4,978로, OECD 평균인 \$11,192보다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1,290으로, OECD 평균인 \$17,06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단위 : \$, %, %p)

기준 연도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p)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p)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p)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p)
'18년	한국	12,535	29.5	14,978	35.3	11,290	26.6	12,914	30.4
	(변화)	▲833	▲1.0	▲1,399	▲2.1	▲657	▲0.6	▲933	▲1.2
	OECD 평균	9,550	21.3	11,192	24.7	17,065	36.9	11,680	25.8
'17년	한국	11,702	28.5	13,579	33.1	10,633	25.9	11,981	29.2
	OECD 평균	9,090	21.2	10,547	24.5	16,327	36.4	11,231	25.8

주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학생 수} / PPP(구매력평가지수)

2) GDP에 대한 PPP : ('17년) 871.70원/\$ → ('18년) 865.72원/\$

3) 한국의 연도별 GDP : ('17년) 1,835.7조원 → ('18년) 1,898.2조원

4) 한국의 국민 1인당 GDP : ('17년) \$41,001 → ('18년) \$42,487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1. 9.15)

2) 국가장학금 1인당 지원액 : ('12) 169만원, 103만명 수혜 → ('18) 343만원, 104만명 수혜

현행 「지방자치법」 3)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범위는 관할 유·초·중·고등학교의 설치·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⁵⁾ 및 제3조⁶⁾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체계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제명(題名)을 비롯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설치 목적 및 교부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 지도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참고로,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734호, 2021. 9.29)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로 신설하여 GDP의 1.1%에 해당하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985호, 2021.10.27)이 발의되어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법제처 및 시·도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므로 고등교육에 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은 관련 법률들과 상충됨.
- 지방교육재정의 70% 이상이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는 미흡하였으므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계기로 교육여건 개선과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대비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재정안정화기금(2020년말 2.3조원) 역시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적립된 것이 아니라 재정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평탄화 기제로 활용되는 것임.
- 아울러, 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재정에 투자할 경우 경기침체 시 교육재정 전체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법제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동 개정안에서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한편, 동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마련된 보통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보통교부금은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인데,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교직원 인건비)의 산정기준란의 교부금산정기준학교 대상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를 제외하고 있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교육청】

-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대상이 아니며, 교육복지, 미래교육 대비 등 지방교육재정 투자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기준재정수요 단위비용 산정 시 학생수 고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학생 수를 고려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임(안 제6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 ----- ----- ---- <u>및 학생 수 등</u>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⁷⁾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⁸⁾를 기준으로 각 시·도 교육청별 교부금을 산정·배분하고 있음.

현행 법령의 기준재정수요 항목 중 이미 학생경비 등에서 “학생수”를 단위비용으로 반영하여 산정 중이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체계상 가능할 것으로는 생각되나,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8) 【참고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로 학생 수 뿐만 아니라 학교, 학급, 교원 수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바, 학생 수만 별도로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측정단위와의 관계 및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

측정 항목		측정 단위	산정 기준
1. 교직원 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사립 특수학교(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의 교원 증원 수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 수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명예퇴직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2. 학교 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나. 학급경비	학급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의 학급 수
	다. 학생경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라. 삭제 <2020. 10. 20.>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
		증설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바. 삭제 <2020. 10. 20.>		
	사. 추가 운영비	학교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중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 수

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일부 발췌(측정항목 3.~8. 생략)

문 의 처
02)6788-5184

【참고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교직원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교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을	전전년도 보수 총액 ÷ 전전 년도 교원 수
	교원 증 원 수	교원 증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증원 교원 1명당 소요액
	교육전문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전문직원 1명 당 임금
	교육공무 원이 아 닌 공무 원 및 사 무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해 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 정의 기준이 되는 사무직원 수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을	· 교육공무원 이 아닌 공 무원: 교육 부장관이 정 하는 교육공 무원이 아닌 공무원 1명 당 임금 · 사무직원: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사무직원 1 명당 임금
	공무원· 사무직원 외의 직 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사 무직원 외의 직원 수 × 단위비 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 개선을	교육부 장관 이 정하는 기 준단가
	명예퇴직 교원 수	1)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 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 는 명예퇴직 교원 수 × 단위 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 청에 따라 교 육 부 장 관 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 의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 수당부담금
2. 학교운영 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Sigma(\text{학교급별} \cdot \text{규모별 학교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1에 따른 다.
	나. 학급경비	학급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급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 급당 6,869 천원 · 초 등 학 교 : 학 급 당 5,109천원 · 중학교: 학 급당 4,918 천원 · 방송통신중 학교: 학급 당 3,962천 원 · 일반고등학 교: 학급당 4,472천원 · 특성화고등 학교 및 산 업수요 맞 춤형 고등 학교: 학급 당 20,031 천원 · 방송통신고 등학교: 학 급당 3,602 천원 · 특수 학교 : 학 급 당 11,798천원 · 영 재 학 교 : 학 급 당 10,522천원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다. 학생경비	학생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생당 328천원 · 초등학교: 학생당 595천원 · 중학교: 학생당 687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당 687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생당 585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당 1,144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당 585천원 · 특수학교: 학생당 1,054천원 · 영재학교: 학생당 1,942천원
	라. 삭제 <2020 10 20>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times$ 단위비용 $\times$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1) 선진형 · 16학급 미만: 50,000천원 · 16~23학급: 80,000천원 · 24학급 이상: 100,000천원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2) 과목중점형: 40,000천원
		증설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교과교실 전환 교 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바. 삭제 <2020. 10. 20>			
	사. 추가운영비	학교 수	$\sum \{ \text{유형별} \cdot \text{규모(연차)별 학교 수} \times \text{단위비용} \}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2의2에 따른다.
	아. 삭제 <2019. 2. 26>			
	자. 삭제 <2019. 2. 26>			
	차. 삭제 <2019. 2. 26>			
3. 교육 행정비	가. 기관 운영비	학교 수, <u>학생 수</u> 및 기준 교직원 수	$[(\text{학교 수} \times \text{학교당 단위비용}) + (\text{학생 수} \times \text{학생당 단위비용}) + (\text{기준 교직원 수} \times \text{기준 교직원 당 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상률}$	· 학교당 단위비용: 9,738천원 · 학생당 단위비용: 63천원 · 기준 교직원 당 단위비용: 552천원
	나. 지방선거 경비	지방선거 경비	1)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교육복지 지원 비	가. 지역 간 균형교육 비	학교 수, 소재 행정 구역 면적,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u>학생 수</u>	$\{ (\text{해당 시·도의 행정구역 면적} \div \text{해당 시·도의 학교 수}) \div \sum (\text{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div \text{시·도별 학교 수})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 \text{해당 시·도의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 \underline{\text{학생 수}} \div \sum (\text{시·도별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 \underline{\text{학생 수}})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나. 계층 간 균형 교육 비	학생 수, 수급자 수, 한 부모 가족 보 호 대 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가 정 및 북 한이탈주 민 가 정 학생 수	$[\{ (\text{해당 시·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div \text{해당 시·도의 전체 학생 수}) \div \Sigma(\text{시·도별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 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div \text{시·도별 전체 학생 수}) \} \times 50\% + (\text{해당 시·도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div \text{전체 시·도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times 50\%] \times \text{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정보화 지 원 수급자 수	(만 6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수급자 수 $\times$ 10% $\times$ 80% $\times$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times$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개인용 컴퓨터 지원액) + (만 6세에서 만 17세까지의 수급자 수 $\times$ 80% $\times$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times$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액)	
	자율형 사 립고등학 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 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수업료 2)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부모 부담 경비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외국어계열고등학교 및 사립국제계열고등학교의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미충원 학생 수 × 단위비용 × 교육부 장관이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전비용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 수업료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1)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는 금액 3) 정산결과 부족한 금액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단위비용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 (移轉)·증설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건축비
	다. 개발지구 내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건축비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건축비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 연면적	공유재산 전환형 규모별 표준 건 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당 건축비
		중설 교 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 당 건축비
		전환 교 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 당 건축비
		매입 대 상 사립 유치 원 수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 단 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립 유치원당 매 입비
마. 학교 통합에 따른 신 설 · 이 전 · 개 축 · 증 설 · 대수 선비	토지면적	학교급별 · 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당 취득비	
	건축 연면적	학교급별 · 학교규모별 건축연면 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당 건축비	
바. 삭제 <2019. 2. 26.>				
사. 사립학 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건축 연면적	1) (학교급별 · 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기 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 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 약 금액]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당 건축비	
아. 학교 기 숙사 시 설비	건축 연면적	학교급별 · 학교규모별 표준 건축 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 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당 건축비	
자. 청사 신설 · 이전비	토지면적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 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 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당 취득비	
	건축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	교육부장관이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연면적	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6. 유아 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sum(\text{연령별 유아 수} \times \text{단위비용})$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령별 지원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교원 처우 수준, 교원의 학급 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당 지원액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유치원 수 × 단위비용) + (원아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단위비용
	라. 삭제 <2015.11.5.>			
7. 방과 후 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 학교 사업 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 단위비용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강자 수	수강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생 1명당 연간 수강료
	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	학급 수	학급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 교육부	교육부장관이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정하는 교실 당 시설비
8. 재정 결합 보 전	가. 지방 교육채 상환	원 리 금 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 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 대 형 민자사 업 임 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 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다. 재정 안정화 지원	지원액	[(해당 연도의 해당 시·도의 학 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 액) ÷ ∑(해당 연도의 시·도별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 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 수요액)] × 교육부장관이 정하 는 금액	

비고

-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급수의 단
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 통신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 교	산업수 요맞춤 형 고등학 교	방송 통신 고등 학교	특수학 교	영재학 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3학급	145,555	45,895	243,797	98,719	315,616	127,446	18,168	357,266	394,517	1,294,517	22,449	423,808	—
5학급	146,155	55,021	—	—	—	—		—	—	—		—	—
6학급	153,824	59,615	280,817	113,527	356,328	143,731		401,052	513,774	1,413,774		449,004	611,028
7학급	161,924	—	—	—	—	—		—	—	—		—	—
8학급	167,566	—	—	—	—	—		—	—	—		—	—
12학급	—	—	334,212	—	424,176	—		473,377	803,111	1,703,111		505,633	1,224,644
18학급	—	—	389,104	—	481,467	—		530,462	1,381,069	2,381,069		554,985	1,358,962
24학급	—	—	444,514	—	533,785	—		589,684	1,506,869	2,506,869		593,099	1,555,068
30학급	—	—	499,724	—	590,265	—		641,450	1,626,535	2,726,535		626,422	—
36학급	—	—	548,114	—	644,368	—		693,437	1,757,229	2,857,229		657,913	1,829,225
42학급	—	—	592,373	—	692,495	—		744,982	1,861,311	2,961,311		686,276	—
48학급	—	—	640,279	—	739,378	—		801,972	1,986,158	3,086,158		716,741	—
54학급	—	—	680,826	—	777,595	—		834,256	2,071,387	3,171,387		747,865	—

-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단위비용에서 "선진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과목중점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규모(연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숙형 고등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240,000천원	270,000천원	300,000천원	330,000천원

나. 통폐합 기숙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300,000천원	400,000천원	450,000천원	500,000천원

다. 국가직무교육 고등학교

학급수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	110,000천원	140,000천원	170,000천원

라.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따른 일반고 전환 후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단위비용	500,000천원	300,000천원	200,000천원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학교 유형	규모	단위비용
1)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고등학교	가) 12학급 이상 18학급 미만	학교당 2,000,000천원
	나) 18학급 이상 30학급 미만	학교당 3,500,000천원
	다) 30학급 이상	학교당 5,000,000천원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증설	증설학급 수 × 150,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증설	300,000천원 + [(증설학급 수-2) × 10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증설	800,000천원
3)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개편	개편학급 수 × 250,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개편	500,000천원 + [(개편학급 수-2) × 15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10학급 미만 개편	1,100,000천원 + [(개편학급 수-6) × 100,000천원]
	라) 10학급 이상 개편	1,500,000천원

3.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교직원"이란 교원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4. 측정항목 제4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5.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산정공식에서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한다.
6. 2022년도분까지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